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34

2023년 6월 2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5월 30일, 송도호 의원(찬성자: 28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다. 상정일자 : 제319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3년 6월 2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송도호 의원)

가. 제안이유

○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의 개정으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었으나, 법령 개정 이후에도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관리대행업체 선정 절차가 아닌 민간위탁 선정 절차를 따르고 있어 조례상의 “위탁”을 “관리대행”으로 개정하여 대행업체 선정 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2018.10)」을 적용케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위탁 또는 수탁업체로 표기된 부분을 관리대행, 관리대행업자로 개정하여 관리대행업자 선정 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이 아닌 환경부 고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2조~제14조)

○ 「하수도법」 및 환경부 고시에 근거한 관리대행 선정절차를 따르되 관리대행 최초 시 시의회 동의 절차를 추가하여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상 행정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 대행 예산 편성 및 운영의 전문성 및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대행 비용 원가 산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개정안은 '13.2월 「하수도법(이하 "법")」이 개정·시행[1]되면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절차가 마련되었으나 서울시의 경우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선정절차를 혼용하여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선정기간이 장기화되고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오탈자 및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표 1] 개정안 주요골자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2.(생 략) 3. **중계펌프장** 이라 함은 하수를 다음 단계의 관로·펌프장 또는 물재생시설로 수송하기 위하여 관로에 설치한 펌프장을 말한다. 4. **"수탁 기관"이라 함은 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물재생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5.~6.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 **"중계펌프장"**----------. 4. **"관리대행업자"라 함은 「하수도법」제19조의2의** ---------- ---------- **대행하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업자를** -----. 5.~6. (현행과 같음)
제5조의2 (편익시설의 사용료 등) ①~⑤ (생 략)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제7조에 따라 편익시설 운영의 위탁을 받은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의2 (편익시설의 사용료 등) ①~⑤ (현행과 같음) ⑥ ---------- **징수를 편익시설 운영을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
제6조(설치·개축 또는 수선) ① 시장은 물재생시설의 설치·개축 또는 수선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재생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수탁**	제6조(설치·개축 또는 수선) ① ---------- ----------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로 하여금**

1) [법률 제11264호, 2012. 2. 1., 일부개정]

현 행	개 정 안
기관으로 하여금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재생시설의 설치·개축 또는 **수선의 시행기관은**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개축 또는 수선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수선은** ----------.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물재생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기 위하여 물재생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하수도법령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능력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물재생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삭 제>** **④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물재생시설 관리·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위탁기간 연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운영의 **관리대행**) ① ----------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능력이 있는 관리대행업자에게 관리대행할 수 있다.** ② ---------- **관리대행할**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1. 제14조에 따른 관리대행 해지로 잔여 관리대행기간을 다른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2. 관리대행기간이 만료되어 재대행계약을 하는 경우** **<삭 제>**
제8조(관리·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리·운영지원) 시장은 **관리대행업자에게 관리대행사무** ----------.
제9조(관리·운영시설) 시장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는 물재생시설은 별표1과 같다.	제9조(관리·운영시설) ---------- **관리대행할** ----------.
제10조(**수탁기관** 선정)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제10조(**관리대행업자** 선정) ① 시장은 **관리대행업자를** ----------

현 행	개 정 안
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확보여부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 1. **관리대행사무의** ----------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확보여부 4. **관리대행사무** ----------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대상 업무 경험자들이 동 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합당한 법인을 설립하고 시장이 위탁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정심의위원회는 수탁자 선정과 동시에 해산한다.** **<삭 제>**	③ **시장은 적정 관리대행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조직 및 인원)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직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조직 및 인원)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 사무를 ----------.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물재생시설의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개축 또는 추가 신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 및 **위탁조**	제12조(**관리대행업자의** 의무) ①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 ----------, **관리대행** ----------. ② **관리대행업자는** ----------. ③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 ④ **관리대행업자는** ---------- **관리대행**

현 행	개 정 안
건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을 기부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채납한다. ⑥ **수탁기관은** 관리·운영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공인회계사** 등 공인기관이 작성한 결산서와 함께 매 사업년도 종료 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건** ----------. ⑤ ----- **관리대행업자에** ----------. ⑥ **관리대행업자는** ---------- **지출에** -----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 **3개월** ----------.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물재생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 또는 감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 **관리대행업자에** ---------- **관리대행사무** ---------. ② ---------- **관리대행사무 처리가** ----------. ③ ---------- **관리대행업자에** ----------.
제14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수탁기관이** 제12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대행의 해지**) ① ---------- **관리대행을 해지할** ---------- **관리대행업자에** ----------. 1. **관리대행업자가** ---------- 2. **관리대행업자가 관리대행사무를** ---------- 3. --------- **관리대행을** ---------- ② ---------- **관리대행이** ---------- **관리대행업자는** --- **관리대행** ----------.

■ 조례안 주요조문별 의견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관련 조례 정비

○ 안 제2조제4호 및 제4호, 안 제5조의2, 안 제6조제1항, 안 제7조 조 제목, 안 제7조제1항에서 제4항,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제1항에서 제3항, 안 제11조, 안 제12조제1항에서 제6항, 안 제13조제1항에서 제3항, 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표 1〕 참조)은 현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절차와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절차를 혼용하고 있던 문제를 해소하고자 조례 상 '위탁' 표기를 '관리대행'으로 개정하는 등 관리대행 제도로의 일원화를 위해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13.2월 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가 위탁계약을 맺는 공공하수도의 위수탁 관리제도가 폐지되고 책임대행 제도로 운영관리 체계가 전환[2] 되었으며,

○ 이에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대행을 위해 환경부는 법 제19조의2[3],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

2) 위탁 제도에서는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시하는 것을 이행하는 것에 불과했고, 위탁업체가 하수처리시설 운영기준을 위반하거나 법적인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책임소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졌으나, 대행 제도는 민간업체가 운영과 관련한 책임자 지위를 갖게 되며,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직접 처벌도 감수해야 하는 방식으로, 공공하수도 관리 책임성이 강화됨.

3)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 ·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②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운영 ·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의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2018-160호)(이하 “환경부 고시”)」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2018.10.)(이하 “지침”)」을 마련한 바 있음.

○ 서울시는 현재 관리대행업체 선정 시 법에 따른 환경부 고시 및 지침에 따른 절차[4]와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절차[5]를 관례적으로 혼용하여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선정 기간이 약 10개월로 장기간 소요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임.

○ 한편, 경기도 성남시 등이 법제처에 질의회신[6]한 바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과 관련된 절차에 대해 법령 및 환경부 고시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 현행법이 공공하수도에 대해 ‘민간위탁’이 아닌 ‘관리대행’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본 개정안이 현행법에 맞추어 위수탁 용어를 관리대행으로 수정하면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새로이 정비하려는 것은 법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됨.

○ 다음으로, 안 제7조제3항은 위탁기간(3년 이내) 규정을 삭제하고 시장이 물재생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관리대행 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

4) (환경부고시·대행지침)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심의), 제안서 평가
5) (서울시 조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심의), 시의회 승인(보고), 협약심사
6) 법제처 질의회신(2건) 안건번호 의견 13-0218, 요청기관 : 경기도 여주군, 회신일자 2013.7.26.
안건번호 의견 14-0142, 요청기관 : 경기도 성남시, 회신일자 2014.7.16.

- 먼저, 위탁기간(3년 이내) 삭제의 경우 법 시행령 제15조의3[7]에서 관리대행 기간을 단순관리와 복합관리로 구분하여 단순관리는 5년 이내로 복합관리는 5년 이상 20년 이내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조례로 별도 정하기 보다는 관련법 규정을 따르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서울시는 현재 3년 단위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3년이 경과하면 연장없이 공고절차를 거쳐 새로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견지하고 있는데 본 개정안과 같이 현행 위탁기간 3년 이내 규정이 삭제될 경우 법 시행령 제15조의3 규정에 의해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경우 5년 이내에서 대행기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리고 시장이 관리대행 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는 것은 2017년부터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8]에 따라 물재생시설 관리대행 시 시의회 동의를 받아 왔다는 점과 '20.11월 탄천 및 서남물재생센터를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관리대행케하면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7)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대행: 단순관리 대행계약
2.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대행: 복합관리 대행계약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법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생 략)

8)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19조제2항[9]에 따라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쳤다는 점 등에서 행정의 연속성 및 균형을 유지하고,

- 자치단체장의 관리대행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리라 하겠음.

○ 다음으로, 안 제10조제3항은 관리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관리대행비를 산정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 관리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은 환경부 고시 및 지침에서 이를 이미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재차 명기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고,

- 적정 관리대행비를 산정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객과적이고 타당성 있는 관리대행비를 산출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려는 취지라 여겨져 바람직하다 하겠음.

○ 참고로, 현재 서울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음.

---

9)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대행사업)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③ - ⑥ (생 략)

[표 2] 서울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현황

구분	중랑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관리대행 시설	일부시설물	현대화시설(1처리장)	3차(총인)처리시설	일부시설물
대 행 시 설	1·2건조, 탈수, 분뇨	1처리장	총인처리시설	분뇨, 탈수, 소각, 건조
대 행 기 간	2021.1 ~ 2023.12	2021.1 ~ 2023.12	2021.6 ~ 2024.5	2021.1~2023.12
운 영 인 력	76명	20명	11명	54명
'23년 예산	13,311백만원	5,593백만원	6,000백만원	10,865백만원
대 행 업 체	대양엔바이오(주)	지에스건설(주) 등 4	대양엔바이오(주) 등 2	대양엔바이오(주)

2) 용어 등 정비

○ 안 제2조제3호, 안 제6조제2항, 안 12조제6항은 오탈자 및 단순한 자구 수정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표 3] 개정안 주요골자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2.(생 략) 3. **중계펌프장** 이라 함은 하수를 다음 단계의 관로·펌프장 또는 물재생시설로 수송하기 위하여 관로에 설치한 펌프장을 말한다. 4. "수탁 기관"이라 함은 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물재생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5.~6.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 **"중계펌프장"**----------. 4. "관리대행업자"라 함은 「하수도법」제19조의2의 ---------- ---------- 대행하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업자를 -----. 5.~6. (현행과 같음)
제6조(설치·개축 또는 수선) ① 시장은 물재생시설의 설치·개축 또는 수선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재생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재생시설의 설치·개축 또는 **수선의 시행기관은**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개축 또는 수선을 시행하여야	제6조(설치·개축 또는 수선) ① ---------- ----------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 **수선은** ----------.

현 행	개 정 안
한다.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 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 · 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물재생시설의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 · 개축 또는 추가 신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 및 위탁조건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증 · 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을 기부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채납한다. ⑥ 수탁기관은 관리 · 운영의 **수입 · 지출에** 관한 사항을 **공인회계사** 등 공인기관이 작성한 결산서와 함께 매 사업년도 종료 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대행업자의 의무) ①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 ----------, 관리대행 ----------. ② 관리대행업자는 ----------. ③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 ④ 관리대행업자는 ---------- 관리대행조건 ----------. ⑤ ----- 관리대행업자에 ----------. ⑥ 관리대행업자는 ---------- **지출에** -----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 **3개월**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도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834

발 의 년 월 일 : 2023년 05월 30일
발 의 자 : 송도호 의원(1명)
찬 성 자 :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성준, 김형재,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승진, 박영한,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신복자, 아이수루,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종복, 이상욱, 이영실, 이원형, 이종태, 임규호, 전병주, 정준호, 한 · 신, 홍국표 의원(28명)

1. 제안이유

○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의 개정으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었으나, 법령 개정 이후에도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관리대행업체 선정 절차가 아닌 민간위탁 선정절차를 따르고 있어 조례상의 “위탁”을 “관리대행”으로 개정하여 대행업체 선정 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2018.10)」을 적용케 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위탁 또는 수탁업체로 표기된 부분을 관리대행, 관리대행업자로 개정하여 관리대행업자 선정 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이 아닌 환경부 고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2조~제14조)

나. 「하수도법」 및 환경부 고시에 근거한 관리대행 선정절차를 따르되 관리대행 최초 시 시의회 동의 절차를 추가하여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상 행정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다. 대행 예산 편성 및 운영의 전문성 및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대행비용 원가 산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중계펌프장”을 “"중계펌프장"”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수탁 기관"이라 함은 제2장의”를 “"관리대행업자"라고 함은 「하수도법」 제19조의2의”로 하고, “위탁받은 기관을”을 “대행하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업자를”로 한다.

제5조의2제6항 중 “징수를 제7조에 따라 편익시설 운영의 위탁을 받은 수탁자에게 위탁”을 “징수를 편익시설 운영을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위탁받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하여”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로 하여금”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선의 시행기관”을 “수선은”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중 “위탁”을 “관리대행”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능력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를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능력이 있는 관리대행업자에게 관리대행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위탁할”을 “관리대행할”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1. 제14조에 따른 관리대행 해지로 잔여 관리대행기간을 다른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2. 관리대행기간이 만료되어 재대행계약을 하는 경우

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 중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관리대행사무”로 한다.

제9조 중 “위탁하여 관리·운영할”을 “관리대행할”로 수정한다.

제10조 제목 중 “수탁기관”을 “관리대행업자”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수탁기관을”을 “관리대행업자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위탁사무의”를 “관리대행사무의”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위탁사무”를 “관리대행사무”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적정 관리대행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중 “수탁기관은 위탁받은”을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중 “수탁기관의”를 “관리대행업자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탁기관은 위탁받은”을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으로, “위탁받은”은 “관리대행”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수탁기관은”을 “관리대행업자는”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수탁기관은 위탁받은”을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수탁기관은”을 “관리대행업자는”으로, “위탁조건”을 “관리대행조건”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수탁기관에”를 “관리대행업자에”로 한다.

제12조제6항 중 “수탁기관은”을 “관리대행업자는”으로, “수입·지출에”는 “지출에”로, “공인회계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로, “3월”은 “3개월”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수탁기관에”를 “관리대행업자에”로, “위탁사무”를 “관리대행사무”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위탁사무 처리가”를 “관리대행사무 처리가”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수탁기관에”를 “관리대행업자에”로 한다.

제14조 제목 중 “위탁의 취소”를 “관리대행의 해지”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위탁을 취소할”을 “관리대행을 해지할”로 하고, “수탁기관에”를 “관리대행업자에”로 한다.

제14조제1항1호 중 “수탁기관이”를 “관리대행업자가”로 한다.

제14조제1항2호 중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을 “관리대행업자가 관리대행사무를”로 한다.

제14조제1항3호 중 “위탁을”을 “관리대행을”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위탁이”를 “관리대행이”로, “수탁기관은”을 “관리대행업자는”으로 하고, “위탁받은”을 “관리대행”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위탁계약 체결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은 종전과 동일하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2.(생 략) 3. 중계펌프장 이라 함은 하수를 다음 단계의 관로·펌프장 또는 물재생시설로 수송하기 위하여 관로에 설치한 펌프장을 말한다. 4. "수탁 기관"이라 함은 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물재생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5.~6. (생 략)	1.~2.(현행과 같음) 3. "중계펌프장"---------- ---------- ----------. 4. "관리대행업자"라 함은 「하수도법」 제19조의2의 ---------- 대행하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업자를 -----. 5.~6. (현행과 같음)
제5조의2 (편익시설의 사용료 등) ①~⑤ (생 략)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제7조에 따라 편익시설 운영의 위탁을 받은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의2 (편익시설의 사용료 등) ①~⑤ (현행과 같음) ⑥ ---------- 징수를 편익시설 운영을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
제6조(설치·개축 또는 수선) ① 시장은 물재생시설의 설치·개축 또는 수선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재생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재생시설의 설치·개축 또는 수선의 시행기관은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개축 또는 수선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개축 또는 수선) ① ---------- ---------- ----------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 수선은 ---------- ---------- ----------.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물재생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기 위하여 물재생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하수도법령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능력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물재생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7조(관리·운영의 관리대행) ① ---------- ---------- ---------- ----------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능력이 있는 관리대행업자에게 관리대행할 수 있다. ② ---------- 관리대행할 --- ----------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현 행	개 정 안
	당할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1. 제14조에 따른 관리대행 해지로 잔여 관리대행기간을 다른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2. 관리대행기간이 만료되어 재대행계약을 하는 경우
④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물재생시설 관리·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위탁기간 연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관리·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리·운영지원) 시장은 관리대행업자에게 관리대행사무 ----------.
제9조(관리·운영시설) 시장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는 물재생시설은 별표1과 같다.	제9조(관리·운영시설) ---------- 관리대행할 ----------.
제10조(수탁기관 선정)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확보여부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제10조(관리대행업자 선정) ① 시장은 관리대행업자를 ----------. 1. 관리대행사무의 ----------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확보여부 4. 관리대행사무 ----------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대상 업무 경험자들이 동 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합당한 법인을 설립하고 시장이 위탁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	③ 시장은 적정 관리대행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정심의위원회는 수탁자 선정과 동시에 해산한다.	
제11조(조직 및 인원)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직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조직 및 인원)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 사무를 ----------.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물재생시설의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개축 또는 추가 신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 및 위탁조건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을 기부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채납한다. ⑥ 수탁기관은 관리·운영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공인회계사 등 공인기관이 작성한 결산서와 함께 매 사업년도 종료 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대행업자의 의무) ①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 ----------, 관리대행 ----------. ② 관리대행업자는 ----------. ③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 ④ 관리대행업자는 ---------- 관리대행조건 ----------. ⑤ ----- 관리대행업자에 ----------. ⑥ 관리대행업자는 ---------- 지출에 -----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 ----- 3개월 ----------.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물재생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제13조(지도·감독) ① ---- 관리대행업자에 ---------- ----- 관리대행사무 ----------

현 행	개 정 안
·시설 등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 또는 감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 **관리대행사무 처리가**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 **관리대행업자에** ----------.
제14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수탁기관이** 제12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4조(**관리대행의 해지**) ① ---------- **관리대행을 해지할** ---------- **관리대행업자에** ----------. 1. **관리대행업자가** ---------- 2. **관리대행업자가 관리대행사무를** ---------- 3. --------- **관리대행을**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 **관리대행이** --------- **관리대행업자는** --- **관리대행** ----------.